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직윤리위원회와 공직역량청문회 분리 실시 등>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73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취지	3
2.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 분리 실시	4
3. 인사청문 관련 기간 연장	6
4.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 열람 근거 마련	9
5. 부칙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 · 소병훈 · 김남희 · 조 국 · 송재봉 · 강준현
이병진 · 이기현 · 김준형 · 임호선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 의안번호 : 1673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함(안 제6조제2항).

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이내로 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자료의 공개가 곤란할 경우 자료제출에 갈음하여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취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도덕성 검증과 자질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져 있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회인사청문기한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인사청문회 종료기한을 현행 위원회 회부 후 “15일”에서 “20일”로, 인사청문회 실시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각각 연장하며,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출 대신 비공개 열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자료 미제출로 위원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 분리 실시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생략) <신설> <신설>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공직윤리청문회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에서 검증하여 직위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최근 인사청문회가 개인 신상에 관한 과도한 의혹 제기, 도덕성 검증 중심 진행으로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윤리성과 업무능력 양 측면에서 각각 충실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인사청문을 분리하여 실시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인사청문회의 분리 실시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4조제3항은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4조¹⁾에 인사청문회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제적 측면에서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에서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1) 「인사청문회법」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사청문 관련 기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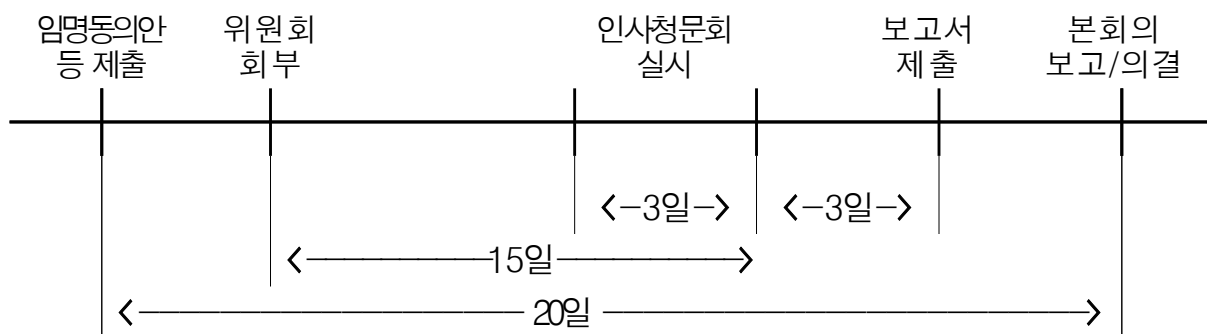
개정안은 인사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인사청문회 실시 기한을 안건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 실시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여, 인사청문회 분리 실시에 맞추어 인사청문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임.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생략)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u>20일</u>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④(생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30일</u> ----- -----. ③·④(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u>15일</u>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u>3일이내</u> 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③(생략)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u>20일</u> ----- ----- <u>5일이내</u> -----. ----- ----- ----- ----- ----- ----- -----. ②·③(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함. 또한,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그림-1] 현행 인사청문기간



이에 따르면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열흘 남짓에 불과하므로,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준비기간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공직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참고로,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97건의 임명동의안등 중 58건(59.8%)이,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104건의 임명동의안등 중 65건(62.5%)이 인사청문에 20일 이상 소요되었음. 또한, 2024년 8월 기준 제22대국회에 제출된 10건의 임명동의안등 중 5건(50%)이 인사청문기간 20일을 초과한 바 있음.

[표-3] 제20대~제22대국회 인사청문기간 사례 (2024. 8. 9. 기준)

구분	실시위원회	전 체	20일 경과 건수	비 율
제20대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1건	19건	90.5%
	상임위원회	76건	39건	51.3%
	소계	97건	58건	59.8%
제21대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8건	14건	77.8%
	상임위원회	86건	51건	59.3%
	소계	104건	65건	62.5%
제22대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3건	3건	100%
	상임위원회	7건	2건	28.6%
	소계	10건	5건	50%

개정안은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여 국회와 공직후보자 모두 청문회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심도 있는 검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인사청문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공직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인사청문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사청문의 실효성 증진과 공직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인한 사실상 중요 정책결정사항의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4.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 열람 근거 마련

개정안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자료제출에 갈음하여 비공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비공개 열람한 자료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위원회가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출석 및 해명,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표-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 열람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자료제출에 갈음하여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등 자료의 비공개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 이후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비공개 열람을 한 것으로 자료의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현행법²⁾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음.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재규정도 마련되지 못해 인사청문회를 내실있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안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 열람 제도를 마련하고, 열람정보는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

2)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는 한편, 위원회 경고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기관에서 비공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는 대신 기관에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율하고 위원회가 비공개 열람 요청을 판단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여,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이 자료제출보다 비공개 열람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음.

비공개 열람으로 획득한 자료는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고 인사청문회의 공개 여부에 따라 해당 자료의 활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면, 자료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열람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비공개 열람이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열람 요청 사유의 적정성 등을 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2조의2제3항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제재임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³⁾에서

3)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2. 4.>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 측면이 있음.

5. 부 칙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적용례를 두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운 대통령당선인이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5]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운 대통령당선인이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전단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고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는 주체는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⁵⁾ 이에 맞추어 적용례의 “임명”을 “지명”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5)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